

게시물관리규정

제정 : 2021.05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시설물에 부착하는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부착하는 모든 게시물(홍보물 및 현수막 등)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게시물의 부착)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현수막 설치대, 옥내 및 옥외 게시판, 기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.

제4조(게시물의 게시 허가) ①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게시신청서[별지서식 1]를 작성하여 사무처 사무팀의 승인을 받고 게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10.01.>

② 학과 및 학생관련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학생취업처 입학학생취업팀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의 게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③ 게시물의 목적, 내용, 규격 등의 측면에서 면학분위기나 환경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.

제5조(게시기간 및 철거) ① 홍보게시물은 게시기간 종료 후 게시자 책임 하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한다. 다만, 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팀 또는 입학학생취업팀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②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은 사무팀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. 다만, 각 부서(학과, 학생회 포함) 등에서 게시한 게시물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철거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10.01.>

1. 무단 게시물
2. 게시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

3. 학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게시물
4. 교육목적, 사회일반통념 및 학칙에 위배되는 게시물
5. 학교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
6. 면학분위기나 환경미화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

제6조(보호 및 책임) ①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에 따른 손해비용을 훼손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게시물의 부착 등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게시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게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

게시(설치) 신청서

1. 게시(설치) 내용 :
2. 게시(설치) 장소 :
3. 게시(설치) 기간 : 20 ~ 20 (일간)

위와 같이 게시물(홍보물 및 현수막) 게시(설치)를 신청합니다.

20

신청기관(또는 소속) : 성명 : (인)
(연락처 :)

대원대학교 OO 처장 귀하

게시(설치) 허가서

1. 게시(설치) 내용 :
2. 게시(설치) 장소 :
3. 게시(설치) 기간 : 20 ~ 20 (일간)

위와 같이 게시물(홍보물 및 현수막) 게시(설치)를 허가함.

20

※ 게시(설치) 기간 종료 후 자진 철거하여 주십시오.

대원대학교 OO 처장